

# 「KB장병내일준비적금」특약

## 제 1 조 적용범위

- ① "KB장병내일준비적금(이하'이 적금'이라 합니다)"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- ② 이 적금의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.

## 제 2 조 가입대상

-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아래 1), 2)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에 한합니다.
- 1)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
- 2)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'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'(주) 원본 제출

단,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 조의 2 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),2)조건 모두 충족하여도 가입 불가

- (주)비대면 신규시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\*로 제출된 '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'도 사용 가능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제공으로 필요시에는 '[필수]개인(신용)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서 (가입자격확인용)' 동의 필요
  - \*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 :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에서 본인의 분산 식별자 (DID: Decentralized Identifiers)와 디지털증명서(VC: Verifiable Credentials) 사본을 제출해 상품 가입 자격을 검증하는 서비스
- ②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, 양도가 불가합니다.
- ③ 이 적금은 금융기관별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
#### 제 3 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

- ① 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하며, 계약기간은 6개월~24개월 이내 일단위로 합니다.
- ② 이 적금의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예정일(또는 소집해제예정일)로 합니다.

# 제 4 조 저축금액 및 저축방법

- 이 적금의 초입금 최저금액은 10원이상, 2회차 이후 저축금액은 1,000원 이상 원단위로, 매월
- (월 초일부터 말일까지) 20만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.
- 단, '장병내일준비적금'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.
-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별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.

## 제 5 조 이율의 적용

- ① 이 적금의 만기이율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.
- ② 이 적금의 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하며, 우대이율은 제6조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합니다.

#### 제 6 조 우대이율

아래 항목별로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. 단,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.

	bstar	
구 분	제공조건	
급여이체 실적	적금 신규월 초일부터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까지 고객이 가입한 적금 계약기간 (월 환산)의 2/3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, 고객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으로 급여이실적이 매월 10만원 이상인 경우	체
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보유	적금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, 고객이 KB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(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) 계좌를 보유한 경우	

# 제 7 조 세율의 적용

- ① 이 적금은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,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다만, 관련 세법('조세특례제한법' 및 '농어촌특별세법')이 개정될 경우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  - 1. '조세특례제한법'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  - 2.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# 제 8 조 제한사항

- ① 이 적금은 일부해지 및 계약기간 변경은 불가하나, 질권설정은 가능합니다.
- ② 이 적금은 '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' 원본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신규 시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 9 조 1% 이자지워금

- ① 1% 이자지원금이란, '장병내일준비적금'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으로 적금 신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%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. ('21.10.14 기준 만기도래 된 만기해지계좌부터 지급)
- ② 지급대상은 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1), 2)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.
- 1) 만기계좌
- 2) 만기계좌 해지할 때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(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 1) 원본 제출
  - 단,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상품으로,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1% 이자지원금 지급 불가

# 제 10 조 3:1 매칭지원금

① 3:1 매칭지원금이란, '장병내일준비적금'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준비금으로, 적금 '납입건 별 원금'(A)에 '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'(B)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'1% 이자지원금'(C)을 합산한 원리금(A+B+C)의 33%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



- ② 3:1 매칭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은 「제9조 1% 이자지원금」에서 규정한 조건과 동일합니다.
- ③ 3:1 매칭지원금은 만기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수령희망계좌로 국방부(국군재정관리단)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
- ④ 3:1 매칭지원금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⑤ 3:1 매칭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2년1월1일이며,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. 단,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상품으로,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3:1 매칭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8.08.29 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9.1.1 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9.4.1 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0.10.12 부터 시행하며 신규가입고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1.10.14 부터 시행하며 신규가입고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
단 제 9 조는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2.1.1 부터 시행하며 기존 및 신규가입고객 모두 적용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2.2.21 부터 시행하며 신규가입고객 한하여 적용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2.5.31 부터 시행하며 신규가입고객 한하여 적용됩니다.

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